

特許制度와 節次들이 (2)

⑦ 特許情報資料와 活用方法

1. 特許情報資料의 重要性

特許情報資料는 다음과 같은 役割을 하므로 그 活用은 매우 重要한 것이다.

- ① 先行技術의 事前調査로 二重投資 및 重複研究을 防止할 수 있으며
- ② 新技術이나 新商品의 傾向을 恒時 把握할 수 있어 技術落後를 防止할 수 있으며
- ③ 先實施技術을 保護할 수 있으며
- ④ 先進技術導入時 選別基準을 提供하여 주며
- ⑤ 輸出對象國에서의 特許紛爭可能性을 事前에 把握할 수 있으며
- ⑥ 他人의 權利에 對한 侵害를 事前에 豫防할 수 있는 點 等이다.

2. 特許廳 所藏資料

現在 當廳 資料室에 保有備置하고 있는 資料는 國內 外의 公報類가 9萬2千餘卷이고 其他 科學技術圖書類가 2萬3千餘卷에 達하고 있어 總 11萬5千餘卷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發刊되는 公報類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特許公報……出願公告가 決定된 發明의 明細書와 圖面을 産業部門別로 整理한 것으로 公示送達事項도 掲載되어 있다. 第1號는 1948年 6月 20일에 發行되었으며 1977年 12月末 現代로 第317號까지 發行되고 있다.
- ② 實用新案公報……特許公報와 같은 體制로 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特許公報속에 함께 收錄되다가 1970年 1月26日의 第210號부터 分離 發行되었고 1977年 12月末까지 第358號가 發行되고 있다.
- ③ 商標公報……1952年 10月 20일에 처음 發行되고 第85號까지는 登錄된 內容을 商品類別로 整理하고 있고 第86號부터는 出願公告決定된 內容을 商品別로 整理하고 있으며, 1977年 12月末 現在 第131號까지 發行되었다.
- ④ 意匠公報……登錄된 意匠內容을 物品區分別로 整理한 것으로 1948年 11月 20일에 第1號가 發行되고 1977年 12月末까지는 第150號가 發行되고 있다. 意匠公報를 除外한 特許公報와 實用新案公報 및 商

標公報는 出願된 內容의 公開와 公衆審査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기 爲한 것이 主目的이다.

이들 公報는 定期的으로 發行되지는 않으나 대개 月 平均 一回程度 發行되고 있으며 特許廳으로부터 轉載承認을 받아 韓國特許協會에서 有償으로 配布하고 있는 바 1年分 또는 一定期間分의 購讀料를 預置하여 郵送받을 수도 있다.

外國의 公報는 日本, 美國, 西獨, 佛蘭西, 英國 等 12個國으로부터 入手하여 備置하고 있는데 日本公報類가 74,700餘卷, 美國公報가 15,300餘卷, 西獨公報가

特許制度와

660餘卷, 其他 國家의 公報가 900餘卷이다.

3. 特許廳資料室 案内

特許廳資料室에는 國內外의 各種特許公報를 비롯한 各種의 特許情報資料와 科學技術文獻을 蒐集, 分類, 整理하여 審査, 審判의 資料로 提供함과 同時에 一般國民에게도 널리 公開閱覽시키고 있다.

資料室에는 閱覽室이 別途로 設置되어 있고, 여기에는 閱覽席이 40席 마련되어 있는 바 一般市民이 自由롭게 그리고 無料로 이들 資料를 閱覽할 수가 있으며 實費로 資料複寫까지 提供하고 있다(1面원 50).

特許廳 以外에도 特許情報資料를 提供하고 있는 機關은 韓國特許協會(電話 25-2830)와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 電話 966-5051)가 있다.

⑧ 出願節次

1. 出願할 수 있는 사람

出願은 自然人이나 法人이나 內外國人を 莫論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行爲無能力者 即 未成年者, 限定治產者, 禁治產者는 單獨으로 出願할 수 없고 法定代理人을 通해서만 出願할 수 있다(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產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例外이다.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함께 明示하여야 하며 出願인이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在外者라 함)인 境遇에는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를 가진 代理人(特許管理人이라 함)을 통해서만 出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出願은 本人이 直接 行할 수도 있고 辨理士에게 委任하여(辨理士를 代理人으로 하여) 出願할 수도 있다.

商標出願을 除外하고 其他 出願에 있어서 出願인과

節次풀이

〈特許廳 指導課〉

發明者 또는 考案者가 同一人이 아닐 때에는 出願에 關한 權利一切를 讓渡한다는 內容의 證據書類를 添付하여야 한다.

2. 外國人의 경우

外國人이 우리나라에 出願하고자 할 때에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이 있어야 함은 勿論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를 가진 特許管理人을 통해서만 出願이 可能하다. 그러나 모든 外國人이 우리나라에 出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條約이나 協定에 依하여 相互權利를 認定해 주고 있는 나라의 國民, 또는 條約이나 協定이 없어도 우리나라 國民에게 出願을 認定해 주는 나라의 國民에 對해서만 그 出願을 認定해 주고 있다.

3. 具備書類

出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書類를 具備하여 所定의 手數料(出願料)를 納付한 領收證을 添付 提出하면 된다.

出願書式은 特許廳 民願案内室에 備置되어 있다.

同一出願인이 同時에 多數의 出願을 하거나 가까운 時日內에 出願을 한 경우에는 法人登記簿謄本의 提出

權利別	提 出 書 願
特 許 實用新案	① 出願書(正, 副本) 各 1 通 ② 明細書(正, 副本) 各 1 通 ③ 圖 面(正, 副本) 各 1 通 但, 特許出願의 境遇 圖面이 必要하지 않은 境遇. ④ 讓渡證(出願인과 發明者 또는 考案者가 同一人이 아니거나, 出願인이 法人인 경우에는 自然人인 發明者, 또는 考案者로부터 出願權을 讓渡받아야 함) 1 通.
意 匠	① 出願書(正, 副本) 各 1 通 ② 圖面이나 寫眞이나 本보기형 또는 見本 4 通 ③ 讓渡證(上記 特許出願의 경우와 같음) 1 通
商 標	① 出願書(正, 副本) 各 1 通 ② 商標를 表示하는 書面 12 通. ③ 商標印版(고무印 또는 銅版) 1 個 ④ 共同出願인 경우에는 同業證明 1 通
共通事項	① 委任狀(代理人에게 委任하는 경우) 1 通 ② 出願인이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登記簿謄本 1 通. ③ 外國人인 경우에는 國籍證明書 또는 法人資格證明書 1 通 ④ 外國人인 경우에는 原語로 된 明細書 및 圖面(必要事項은 아님) ⑤ 優先權主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立證하는 書類.

은 1 通만 하여 다른 出願書에 準用해서 할 수도 있다.

4. 出願手數料

出願手數料는 基本審査料와 方式審査料 및 附加料로 되어 있다.

方式審査料는 出願마다 2,000원으로 되어 있고 基本審査料는 特許出願이 10,000원, 實用新案登錄出願이 8,000원, 意匠과 商標登錄出願이 6,000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附加料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의 경우 出願明細書(圖面 包含)가 20면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5면마다 1,000원씩 加算되며, 商標의 경우 指定商品 指定營業, 指定業務가 各各 5個를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每商品(營業, 業務)마다 1,000원씩 加算된다.

權利間의 出願變更時에는 新規出願時와 同一한 出願

特許制度와 節次풀이 (2)

료를 納付하여야 한다.

出 願 料 一 覽

權利別	區分基本方式		附 加 料
	審査料	審査料	
特 許	10,000 원	2,000 원	出願明細書(圖面包含)가 20면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하는 5면마다 1,000원씩 加算함.
實 用 新 案	8,000 원	2,000 원	
意 匠 (類 似 意 匠)	6,000 원	6,000 원	
商 標	6,000 원	2,000 원	指定商品, 指定營業, 指定業務가 各各 5個를 超過하는 境遇에 그 超過하는 每商品(營業, 業務)當 1,000원씩 加算함.
存續期間更新 登 錄 出 願			
指定商品追加 登 錄 出 願			

5. 明細書(特許·實用新案)

明細書의 크기는 16切紙(190mm×268mm)로 하여 60g/cm²의 백상지를 使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그리고 明細書는 上端 25mm, 下端 15mm, 左端 20mm, 右端 15mm의 餘白을 두고 線을 그어 그 內容을 記載하여야 한다.

明細書는 한글로 가로로 띄어 쓰되 打字함을 原則으로 하며, 1면의 字數는 統一打字版의 字數를 基準으로 20行 以內로 하여야 한다. 明細書의 各面에는 左端上部로부터 線밖에 每 5行마다 그 該當行數를 表示하고 下端線 中央에 그 面數(圖面 包含)를 一連番號順으로 表示하는 것(例 "4-1" 또는 "4의 1" 등)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面數表示에는 出願書(表紙)나 讓渡證, 委任狀 및 其他 添付되는 參考資料는 除外되고 明細書와 圖面만이 該當된다. 明細書中 誤字의 訂正, 削字, 追加가 있을 때는 左端線 또는 右端線의 空欄 속에 이를 表示하고 捺印하여야 한다.

明細書는 그 發明이나 考案의 名稱, 圖面이 있을 때에는 圖面의 簡單한 說明, 發明 또는 實用新案의 詳細한 說明, 特許請求의 範圍 또는 實用新案登錄請求의 範圍의 順으로 項을 設定하고 그 內容을 說明하여야 한다. 發明 또는 實用新案의 詳細한 說明은 그 發明이나 考案의 目的, 構成 및 作用效果에 對하여 그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사람이면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고 實施할 수 있는 程度로 記載하여야 한다. 이中 發明(考案)의 目的은 그 發明(考案)의 該當産業分野를 明示하고 그 發明(考案)이 屬하는 가장 가깝고 가장 最近의 從來技術과 對比하여 說明하여야 하며,

發明(考案)의 構成은 그 發明(考案)의 構成에 必要不可缺한 事實이 무엇인지를 明示하여야 하며, 發明(考案)의 作用效果는 그들 新規한 構成의 作用과 이로 因하여 그 發明(考案)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效果에 對하여 理論的으로나 實驗的으로 納得할 수 있도록 說明되어야 한다.

그리고 特許請求의 範圍 또는 實用新案登錄請求의 範圍에는 그 發明 또는 考案의 構成에 必須不可缺한 事項만을 記載하여야 하며 機能의 이거나 作用效果에 關한 不必要한 事項의 記載는 包含시켜서는 안 된다.

以上과 같이 明細書作成에 關해서 大略 說明하였지만 한 가지 附言할 것은 明細書는 公知技術이 무엇이며 그 發明 또는 考案에 依한 新規한 技術이 무엇인지를 明確히 區分할 수 있도록 說明되어야 誤解로 因한 拒絶을 可及的 免할 수도 있고 後日 紛爭의 根源을 除去할 수 있다.

6. 圖面(特許·實用新案·意匠)

圖面用紙는 가로 190mm 세로 268mm 크기의 트레이싱油紙 또는 트레이싱布(黃色 또는 赤色인 것은 除外)를 세워서 使用하여야 하며 用紙의 左右 및 下端에 各各 적어도 20mm, 그리고 上端에 35mm의 餘白을 두어야 한다. 意匠의 경우에는 正投像圖法에 依한 6面圖(平面圖, 底面圖, 正面圖, 背面圖, 右側面圖, 左側面圖)와 必要한 경우에는 參考圖(使用狀態圖, 斜視圖, 斷面圖等)를 作成하여 提出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寫眞으로 代身하여 提出할 수도 있다.

圖面은 特許나 實用新案의 경우 正本에 靑寫眞 1通 副本에 原圖를 各各 明細書 뒤에 綴하고, 意匠의 경우에는 正本에 靑寫眞復寫圖面 3通, 副本에는 原圖를 各各 出願書 뒤에 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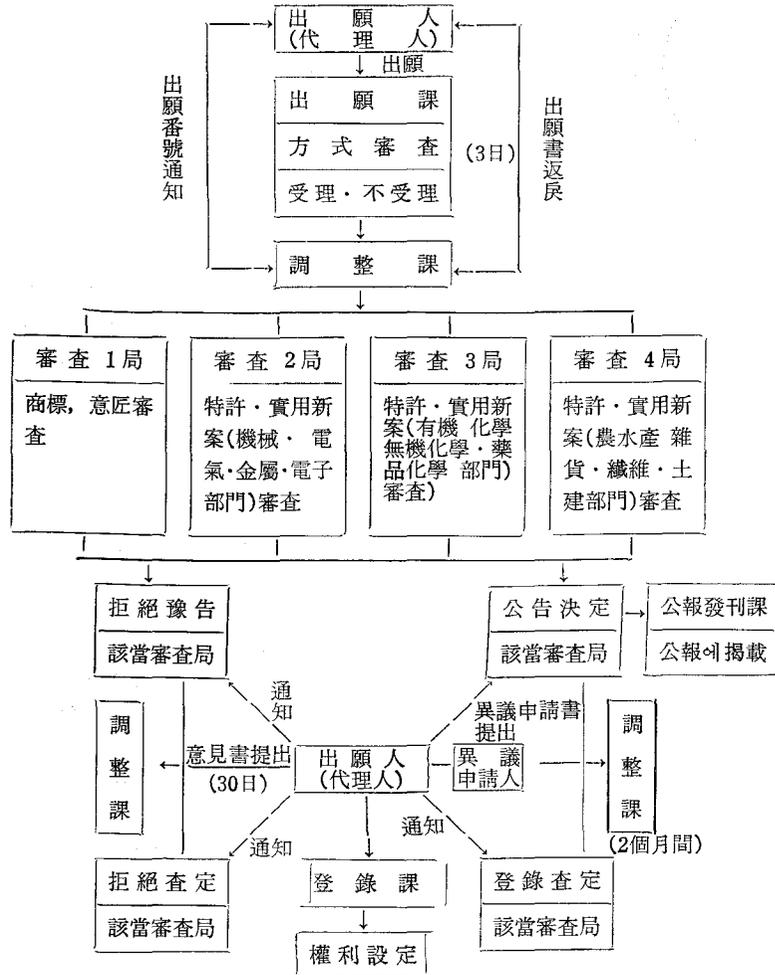
圖面이나 明細書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黑色잉크(打字包含) 등으로 作成되하여야 한다.

7. 代理人制度

特許法上 代理人制度라 함은 出願, 請求 및 其他의 節次를 밟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한 節次에 關해 必要한 知識이 없거나 時間과 距離上의 理由 또는 特許法上 代理人에 依하지 않고는 그러한 節次를 밟을 수 없는 경우에는 本人이 直接 節次를 밟지 않고 다른 사람을 代理人으로 하여 節次를 밟게 하고 그 結果를 自己에게 歸屬시키는 制度이다.

出願이나 請求等의 大部分이 이와같은 代理人制度를 活用하고 있는데, 代理人은 辨理士法에 依하여 資

出願의 處理過程 圖示



格을 가진 辨理士만이 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萬一 그 資格이 없는 사람이 辨理士業務를 行하면 處罰을 받게 되어 있다. 代理人에게 委任한 경우에는 그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委任狀)을 作成, 提出하여야 하며 그 代理人에게는 一定한 報酬를 支拂하여야 한다.

8. 出願에 관한 其他事項

出願書가 特許廳에 提出되면 出願番號通知書가 出願人(代理人이 있을 때에는 代理人)에게 *郵送되며, 그 出願番號通知書에는 出願日字와 出願番號가 表示되어

있다.

出願人(또는 代理人)에 依한 出願書의 補正은 그것이 要旨變更에 該當되지 않는 한 出願公告되기 以前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出願書 또는 委任狀等に 捺印하는 出願人의 印章은 印鑑이 아니라도 되나 出願人의 姓名과 住所는 住民登錄上의 姓名 및 住所와 一致하여야 한다.

出願書는 特許廳 出願課에 直接 提出할 수도 있고 또는 郵送할 수도 있는데 郵送時에는 郵遞局에서 消印된 日字가 出願日字로 認定된다.

一제 續一